가짜뉴스 규제

박경신 고려대학교/오픈넷 2019년 11월

표현의 자유 기본원리

- 표현의 내재적 가치
- 표현의 도구적 가치: 민주주의, 진실
- 표현은 interactive 하다. 즉 청자와 화자의 '합작품'이다.
- 표현의 결과는 청자의 정보처리에 의해 mediate된다.
- 표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화자나 정보에게 지울 수 없다.
 - →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의 원리(미국)
 - → 민주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규제의 원리(유럽)

허위주장에 대한 규제

- → 위 기준에 비추어 허용되는 표현규제 (괄호 안은 해악)
 - 명예훼손 (제3자의 피해자 기피)
 - 사기 (청자의 재물 박탈)
 - 저작권 (저자의 잠재적 시장 박탈),
 - 폭탄헛소문법 (대중교통수단에서의 다수인들의 동시다발적 도피행위에 따른 부상, "verbal act(언사적 행위)")
 - 위증 (재판에서의 사실확인 노력 오도)
 - 위조 (부당한 권리의 행사)
 - 아동포르노그래피 (아동성학대영상 즉 제작과정에서 아동에게 발생한 피해)
 - 혐오표현 (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. Cf. 지배층에 대한 혐오표현?)
 - 음란물 (예외? 합법적인 행위를 묘사한 표현물이 유통이 끼치는 해악?)
 -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(선거의 공정성. 그러나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. . .)
- 허위사실유포죄? 보통은 "공익", "혼란" 등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해악이 적시되지 않음 -> 위헌 및 인권침해로 받아들여짐
- 역사: 실제로 권위주의 정부에서 진실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됨. 예) 유신정부의 긴급조치 1호의 첫번째 신설범죄 "유언비어유포죄"

사례: 미네르바

- 인기경제블로거 2007년 미국수출 대기업들에 유리한 고환율정책에 대한 비판
-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검 추궁 → 미네르바 구속
- 블로그: "외환거래중단 공문 1호!" → 사실: 전화로 거래 자제 요청
- 블로그: "외환거래 중단" > 사실: 외환거래 "거의" 중단
- 전기통신기본법 47조 "공익을 훼손하기 위해 허위의 통신을 한 죄"
- 1번도 집행되지 않은 법
- 입법연혁 전파법상 타인을 사칭한 통신을 금지한 규정
- 결론: 피고인 무죄 ("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" > 의도 부인)
- 결론: 법 위헌 ("공익 훼손" 이유로 허위주장 처벌은 명확성 위반).
- 허위의 해악 통제? 국가보위를 위한 사법권력의 동원?
- 결과: 다음 아고라의 피폐화

국제인권기준

- R v. Zundel (Canada, 1992): 유태인대학살 부인죄 위헌
- Chavanduka & Choto (Zimbabwe, 2000): 군인 소요 가능성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"대중을 동요하기 위해 허위주장 배포한 죄" 위헌
- Minerva case (Korea, 2010): 한국정부의 외환관리 행태에 대한 블로거 논 평에 대해 "공익을 훼손하기 위한 허위의 통신을 한 죄" 위헌
- Andare (Kenya, 2017): 페북 댓글로 타인의 소녀 성착취 의혹을 날조하여 비난한 것에 대해 "의도적으로 심적 불안을 끼치기 위해 허위통신을 한 죄" 위헌

민주사회에서 부정확성의 가치 (Zundel)

- 환경운동가가 '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다'는 주장이 과학자들에 의해 허위로 밝혀질 것이 두려워 그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옳은가? 삼림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말이다.
- 인근의 원자력발전소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을 과학에 의해 영향이 최소한임이 입증되는 것이 두려워하지 못해야 하는가?
- 의사가 뇌수막염이 유행이라는 말이 허위로 밝혀질까봐 그 말을 하지 못 하는 것이 옳을까?
- 소수민족이 자신의 동료들의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두려워 해야 할까?"
- → 공통점: 화자가 가진 선의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는 공익의 가치

의도적인 허위의 가치 (Zundel)

- 의도적인 허위주장도 표현의 자유를 떠받치는 가치들과 관련되어 유용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- 동물학대 반대 운동가가 통계를 조작하여 '동물학대건수가 증가하고 있다' 고 주장했다면 처벌되어야 하는가?
- 의사가 유행바이러스 대응을 독촉하기 위해 유병율과 유병지점을 조작했다면 처벌되어야 할까?
- 예술가가 특정 사회에서는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주장을 한다면 (예: 살만 루시디 <악마의 시>) 처벌되어야 하는가?
- 이 모든 주장들은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
 → 화자에게 있는 약간의 악의. 이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다투어져야 할까? 형사처벌로 다루어져야 할까?

허위사실유포죄

- 허위와 진실은 구분하기 어렵다.
- 과학철학: 진실은 잠정적이다. 과학은 반증할 수 있는 허구(가설)을 제시하고 반증에 실패하면서 진실의 범위를 넓혀가는 학문
- 처벌할 정도 명백한 허위? 그런 허위라면 어떤 해악을 끼칠까?
 예) 지구평평론, 백신무용론
-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허위는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해악이 있는 것. 그러나 그 해악 때문에 검찰이 칼날이 들어간다면? 목전의 진실을 밝힐 가능성은?
 - 2012: 정봉주의 이명박 BBK주가조작 의혹
 - 2019: "다스는 이명박 소유!"
- 진실은 항상 숨겨져 있다. 진실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만드는 것은 오직 의혹제기뿐!

허위에 대한 사회의 대응

- 깨어있는 시민
- 언론의 각성
- 더 많은 사실의 공개
 - 진실명예훼손죄의 폐지 + 공공데이터 개방 (예: 판결문 공개)
- Marcelo Mendoza 2010년 연구 칠레 지진 때 트위터를 통한 재난 관련 정보교환에서 충분한 자정작용 확인

새로운 주장: 가짜뉴스가 2016년 선거를 망쳤다!

- 가짜뉴스란? = 가짜 언론사 뉴스 (fake media's news)
- 2012년말 버즈피드(<u>Buzzfeed</u>): "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"는 등의 가짜 언론사의 페이지가 가장 많이 페이스북에서 공유되었음.
- 2012년말 이코노미스트/유거브(<u>Yougov</u>): "트럼프 투표자들의 40% 가 민주당이 아동성매매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믿으며 36%가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믿는다.

시간이 흐른 뒤. . .

• 2018년 MIT연구 – "소셜미디어에서 허위주장이 진실보다 더 넓게 더 긲게 전파된다"





OCAL NEWS NOW

STORIES COMMUNITY ENTERTAINMENT SPORTS LIFE ABOUT LATEST NEW

ope Francis Shocks World, Endorses onald Trump for President, Releases atement

CS: Pope Francis Endorses Donald Trump









HEADLINES

ALIENS

MUTANTS

ANTS SPORTS

ARTS

BAT BOY



ALIEN ENDORSES TRUMP

November 6, 2016 by Frank Lake

**** 21 Votes

The Weekly World News Alien has endorsed the winning Presidential candidate s
1912 when Woodrow Wilson received the endorsement of Alien just two days be
the election. Here again Alien has declared his "undying support" for Donald J. T.

진짜 문제일까?

- 1. 페이스북 공유는 공유된 가짜뉴스가 진실이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?
- 2. 진짜 선거에 영향을 끼쳤던 뉴스는 오바마 케냐 출신설. 그러나 가짜뉴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. 공화당원들이 대통령출생증명법안을 제출하고 트럼프가 계속된 인정거부하면서 발생함. > 정치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?
- 3. 정녕 문언상의 허위가 문제일까? 예) <u>Alien Endorses</u> <u>Trump</u>, 문재인 치매설

독일 소셜네트워크 법에서 명시한 위법한 콘텐츠

German social network act (2017년 3월 시행)

- 위헌조직 선전물 반포하는 내용
- 위헌조직 표시(기, 휘장, 제복, 표어 및 경례형식 등)를 사용하는 내용
- 연방대통령을 모독하는 내용
- 국가 및 국가상징물 모독(각 주의 휘장, 기, 문장, 찬가의 비방 등)하는 내용
- 범죄를 선동하는 내용
- 인종학살·전쟁범죄·강도등의 범죄를 범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
-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니
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
- 타인의 종교적 신조 또는 세계관을 모욕하는 내용
- 게시자에 대한 형사처벌(x) 플랫폼업자에 대한 벌금(O)
- 허위사실 유포죄(X) 기존 형법에 불법으로 정해진 정보(O)

- 모욕
- 비방(타인을 경멸하거나 또는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주장하거나, 또는 주장하는 사실이 증명할만한 진실이 아닌 경우)
- 중상(타인을 경멸하거나 또는 세평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그의 신용을 위해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는 내용)
- 협박
- 증거로 중요한 데이터의 위작하는 내용
- *독일 형법 제86조, 제86조a, 제90조, 제90조a, 제111조, 제126조, 제130조, 제140조, 제166조, 제185조, 제186조, 제187조, 제241조, 제269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
호주 (2019년4월 시행)

- 1. <u>Failure by a service provider</u> to notify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, within a reasonable time, that <u>abhorrent violent material</u> relating to conduct which is occurring, or has occurred, in Australia is accessible on a service.
- 2. Failure by a service provider to <u>expeditiously remove, or cease to</u> **host**, abhorrent violent material that is accessible within Australia.
- The changes to the Criminal Code empower the eSafety Commissioner to issue a notice giving rise to a presumption that a service provider has been reckless as to whether its service can be used to access/host material which is violent abhorrent material at the time the notice was issued, unless the service provider can prove otherwise. <a href="https://example.com/structure/changes-reckless-service-notice-no



추진 기본 방향



"허위조작정보" 근절, 올바른 여론 형성과 사회 전반의 신뢰 제고



생산단계	유통단계	소비단계	개선
[1] 허위조작정보 관련 범죄 집중 단속수사 - 특별단속 강화		5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- 생애주기교육 강화	기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추진의원발의 법안
- 중간유포자 처벌		- 인프라 구축 강화	검토 및 입법지원
- 유관기관 협력 강화		- 협업체계 구축 및 대응	
② 사업자 자율 규제 기반 조성	③ 허위조작정보 실태조사 및 신속한 차단	⑥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등	
- 자율규제 기반조성	-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담당관제 운영	- 대국민 홍보 추진	
- 기술적 방안 지원	- 불법정보 심의강화 및 신속한 차단 - 유통 실태조사	- 민관 협력체계 강화	
	4 팩 트 체 크 지 원 및 활성화		
	- 범부처 차원의 팩트체크 강화		
	-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		

"허위조작정보 대응 관계부처 TF" 구성·운영

JTBC 태블릿 조작설은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킬까, 아니면 불신하는 국민들이 믿는 걸까?

추진 배경

- □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허위조작정보*가 사생활 음해수준을 넘어 민감한 정책이나 국가안보까지 확대되는 등 '민주주의 공론의 장' 위협
 - * '가짜뉴스'는 의견제시, 오보, 지라시, 풍자, 유언비어 등의 단순 허위사실과 혼용되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, 악의적 의도의 허위정보를 의미하는 '허위조작정보'로 변경 사용
- o 미디어 공급주체가 확대(전문언론인→일반시민)되면서 허위조작정보도 무분별하게 생산·유통·소비되고 있어 여론형성을 저해
 - ※ JTBC 태블릿 PC 조작, 5·18 북한특수군 개입, 노회찬 의원 타살, 19대 대선 부정선거, 정부·여당 개헌 뒤 고려연방제 추진 등 사례 지적(한겨레, '18.9.28)
- 이에 따라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 심화
- ▶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시결과 "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유튜브 동영상을 직접 보거나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"고 응답한 비율이 34%, "한국 사회에서 유튜브를 통한 허위 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"고 응답한 비율이 74%에 달함(18.8월)
- □ 허위조작정보 확산은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하고 사실을 왜곡, 언론과 사회 전반의 신뢰 저해 및 정치·경제적 피해 야기
 - ※ 현대경제연구원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30조원(GDP의 1.9%) 당사자 피해 22조7천억원, 사회적 피해 7조3천억원으로 추정(17.3월)

「허위조작정보 대응 관계부처 TF」구성 특단의 강력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·추진

※ 국무총리, "가짜뉴스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교란하고 있으므로,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작 : 유통 · 소비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" 지시(18.10.2)



나아갈 길: 진실의 재고를 키워라!

- •진실명예훼손 폐지
- 2015년 11월 UN 인권위원회 대한민국에 권고:
 - " 진실의 항변은 절대적이다. 공익으로 한정되어

서는 안 된다."

마지막 남은 문제: 러시안 여론 조작

- 러시아에 의한 미국 내 여론조작
- 북한에 의한 국내 여론조작?
- →국정원의 역할?
- →허위사실유포죄 부활?
- →군사독재정권의 '유언비어유포죄'로의 귀환?